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

▣ **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**

▣ **❶과거사 정립**

●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

-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

☑ **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**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**,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**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**함

☑ **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**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**

☑ **대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4다234155 판결**

▶과거사 **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** 국가로부터 **배상을 받을 수 없음**

☑ **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01622, 2015. 1. 22. 선고 2012다304365 판결 (광주항쟁 손해배상청구 사건)**

▶민주화보상법에 따른 **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**에는 **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**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

● 대통령긴급조치 사건

-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**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**함

☑ **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**

▶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**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**

☑ **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824 판결**

▶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**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**

▣ ❷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

● 이석기 전 의원 사건

-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**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**

> ☑ **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**
>
> ▶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**내란선동죄로 인정**함

● 원세훈 사건

- **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**에서, **공선법 위반 혐의**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**대법원에서 파기환송**

> ☑ **대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**
>
> ▶원심에서 **공선법 위반 혐의**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한 일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**파기환송**함

●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

- **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**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**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**을 걺

> ☑ **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2836 판결**
>
> ▶**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**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, **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.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**이고, 피고인이 **중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·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** 등은 **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·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**로 적극적으로 호응·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● 밀양 송전탑 사건

- 고압송전선 및 송전탑 위치 문제를 두고 **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** ⇨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**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,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**

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

☑ **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. 10. 9.자 결정문** 이유 中

▶"송전선로 공사는 **공익사업으로서,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**에 근거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고, **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변전소의 과부하와 전력수급에 차질**이 발생한다"

●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

-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

☑ **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판결**

▶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(중략) **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**하여 (중략) 사실오인, 비례 · 평등의 원칙 위반,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 ·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●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상황의 조기 극복 방안 제시

- 미국 9 · 11 테러 관련 VCF(Victims Compensation Fund)에 의한 보상 제도 벤치마킹 ⇨ 법관 등이 참여하는 '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' 에 의한 신속하고 종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 국회에 제시

- 사법부 제시 법률안이 그대로 반영된 '4·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' 제정

▣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

● 통상임금 사건

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**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(약 38조 원으로 추산됨)을 최대한 고려**하여,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**적절한 결론을 제시**함

☑ **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, **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**시킴

●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

⁝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**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**

할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임(대법원 계속 중인 2012다115991 사건의 원심 등 다수)

- 그럼에도, ①중복할증 시 **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(약 8조원 + 향후 매년 약 2조원)을 고려**하고, ②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**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**하고 있음

● 키코 사건

- 금융기관과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**양측이 승복**할 수 있는 결론 도출

> ☑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
> ▶키코 통화옵션계약이 **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**

●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

-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**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철도산업발전방안' 에 따라 추진**된 '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' 를 **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·갈등 상황을 종식**시킴

> ☑ 2013. 12. 27. 대전지방법원
> ▶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**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**

▣ ❹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

● KTX 승무원 사건

-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**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**함

> ☑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96922 판결
> ▶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**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**하고, **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**

● 정리해고 사건

-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**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**한데, **선진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**을 위하여 노력함

☑ **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3735 판결**

▶악기 제조업체인 **콜텍**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

☑ **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14517 판결**

▶**쌍용차**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,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,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

● 철도노조 파업 사건

- **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**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

☑ **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468 판결**

▶**철도공사**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,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**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**

●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

- **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**에 대한 사건 ⇨ 유효 여부에 따라 **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** 예상(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,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,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)

☑ **대법원 2012다96120 사건**

▶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(**금속노조의 산하조직**)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**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(피고)로 변경하는 결의**를 하자,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⇨ **2015. 5. 28. 공개변론 실시,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**

▣ ❺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

●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

-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, **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**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

☑ **대법원 2012. 4. 19.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**전교조**

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

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

-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아니한 **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**과,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**통보처분의 효력을 인정**하기로 함

☑ 대법원 2015. 6. 3.자 2014무548호 결정

▶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**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**